

항해용선계약상 집단대표중재관련의 사례분석*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한낙현**

A Case Study in Relation to the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Focused on the Asbatankvoy Form-

Nakhyun Ha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 of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with Asbatankvoy form. This study analyses the Stolt-Nielsen case as a data. In this case, One Class Rule requires an arbitrator to determine whether an arbitration clause permits class arbitration. The parties selected an arbitration panel, designated New York City as the arbitration site, and stipulated that their arbitration clause was silent on the class arbitration issue. The panel determined that the arbitration clause allowed for class arbitration, but the District Court vacated the award. But the Second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because petitioners had cited no authority applying a maritime rule of customs and usage against class arbitration, the arbitrators' decision was not in manifest disregard of maritime law; and that the arbitrators had not manifestly disregarded New York law, which had not established a rule against class arbitr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imposing class arbitration on parties who have not agreed to authorize class arbitr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Federal Arbitration Act.

Key Words : Voyage Charter, Asbatankvoy Form, the Stolt-Nielsen Case, Arbitration clause, Cass Arbitration, Federal Arbitration Act

▷ 논문접수: 2011.01.31 ▷ 심사완료: 2011.03.10 ▷ 게재확정: 2011.03.24

* 본 연구결과물은 2011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부교수, nhhan@kyungnam.ac.kr, 055)249-2437.

I. 서론

항해용선계약은 선박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공하여 운송물의 운송을 행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항해용선은 해상운송계약의 형태 중 가장 일찍부터 발달하여 19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운송계약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Baughen, 2009; Boyd, et al., 2008; Thomas, 2004). 항해용선계약은 운송계약인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우리나라 상법 제827-841조는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규정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고 있어서 상법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거나 명확한 합의가 없을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송상현·김현, 2008; 정영석, 2005).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세목에 걸쳐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안 될 항목이 많다. 그러나 계약체결시 이들 세목을 모두 약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서에 상세한 규정이 들어 있는 공인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서식의 사용으로 후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간의 협상의 증점을 운임률, 정박기간 및 접안기간, 체선료, 선적지 회항기일, 계약일수 등 서식상의 문제점에만 한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한낙현·박영배, 2009). 오늘날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식 외에도 많은 관용서식이나 사설서식이 사용된다.¹⁾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Asbatankvoy 서식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 서식은 Asba(Association of Shipbrokers and Agents(USA))사에서 발행한 것으로써, 유류거래에 사용되는 주도적인 항해용선계약서식에 해당한다.²⁾

한편 Asbatankvoy 서식 제24조(중재조항)는 “본 용선계약 외에 발생하는 어떤 분쟁이나 의견차이는 중재와 관련하여 유효한 법률에 기하여 본 용선계약서 Part I에 규정된 장소로 런던이나 뉴욕의 중재원에 회부될 것이다.”³⁾ 이후 3명의 위원회가 구성되며 각 1명은 선주와 용선자가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선주와 용선자가 같이 임명한다. 이 3명 중 2명의 결정이 최종판정이 될 것이다. 각 당사자는 중재를 요청하는 의견차이나 분쟁에 대략적인 진술과 함께 첫 번째 당사자에 의하여 선임된 중재인의 이름과 주소를 상술한 서면통지를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어디서 그가 수령하든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첫 번째 통지의 송달 후 20일 이내에 첫 번째 당사자의

1) 항해용선계약서식의 종류에 대하여는, 김종석, 2009, p.5; 임석민, 2007; 이광희·이원정, 2009 참조.

2) 이것은 유조선항해용선계약서식의 일종이다. 미국의 해운중개업·대리점협회가 1977년에 Exxon사로부터 “Essovoy 1969”의 판권을 양수한 것이다. 주로 케미컬탱커, 제품탱커의 항해 용선계약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STBVoy는 Exxon사가 작성한 유조선항해용선계약서식인데 현재는 다른 용선자와 선주의 요구에 따라 미국해운중개업·대리점협회가 1984년에 Exxon사로부터 판권을 취득하여 “Asba II”라는 새로운 코드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日本 荷主協會, 2003).

3) 1993년 Gencon 서식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Williams, 1996).

대리인에게 통지가 송달되면 상대방은 상술한 의견차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인을 선임하게 된다. 그런 후 첫 번째 당사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두 번째 중재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상대방에 의하여 선임된 두 번째 중재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될 것이다. 2명의 중재인이 두 번째 중재인의 임명 후 20일 이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면 중재인들은 세 번째 중재인의 임명을 위하여 앞에 설명한 도시의 해난심판원의 판사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으며 판사에 의한 중재인의 임명은 이 중재인이 2명의 중재인에게 임명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것이다. 중재인들이 양측의 심리를 중지할 때까지 각 당사자는 심리와 판정을 위하여 본 용선계약서 하의 분쟁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상대방 대리인과 중재인에게 서면통지를 송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 조항에 따라 결정된 판정에는 비용, 변호사 수수료를 위한 적정한 수당을 포함할 것이며, 재판은 재판권을 가진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채택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Stolt-Nielsen S.A. ET AL v. AnimalFeeds International Corp.* 사건⁴⁾(이하, “*Stolt-Nielsen 사건*”이라 한다)은 *Asbatankvoy* 서식의 중재조항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미국 연방 최고법원은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항해용선계약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주로 항해용선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재명(2009), 우성구·한낙현(2007), 이원정·방희석(2006), 한낙현(2008), 한낙현·김재명(2008), 한낙현(2009), 한낙현·김은주(2010) 등이 있으며, 김종석(2010)은 항해용선계약상의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박길상·양정호(2006)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의 개시요건을 중심으로 각각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 기초자료서 집단대표중재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하여 고찰한 후, 이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중재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전혀 분석되지 않은 집단대표중재를 분석하고 있는 것에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4) No.08-1198, 599,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Argued December 8, 2009, Decided April 27, 2010.

II. 집단대표중재(소송)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관한 고찰

1. 집단대표중재(소송)

집단대표중재(class arbitration)란 공통의 권리 혹은 이익을 갖고 있는 사회집단 전체를 대표하여 1명 혹은 소수의 자가 당사자가 되는 중재를 말하며, 또한 집단대표소송(class action)⁵⁾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유조선의 침몰로 인한 원유 유출 때문에 인근 바다의 양식장의 어패류가 몰살당한 때에 양식장의 어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가 유조선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집단대표소송에 있어서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집단의 구성원이 다수⁶⁾이어서 모든 구성원을 소송당사자로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② 소송이 모든 집단구성원에게 공통되는 법률문제 혹은 사실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③ 집단대표자의 소송제기원인과 집단구성원의 소송제기원인이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⁷⁾ ④ 대표자는 집단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⁸⁾ 집단소대표송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집단대표소송의 제기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⁹⁾ 집단대표소송은, ① 집단의 구성원이 각기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prejudice)을 받을 것, ② 피고의 행위가 집단의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선언 혹은 금지명령이 집단전체에 이익을 줄 것, ③ 집단대표소송과 집단구성원의 개별소송을 비교하는 경우 집단대표소송이 소송을 판결하는데 있어 개별소송보다 우월할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즉 미국법에서는 권리의 집합적인 행사인 집단대표소송과 고액이 되는 경향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소송에 의하면 배상액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늘어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미리 규정함으로써

5) 집단대표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은 집단구성원에 유리·불리를 불문하고 집단구성원 전원을 구속한다. 다만 집단대표소송에서 배제하여 줄 것을 명백히 요청한 자는 제외된다(이상윤, 2003 ; 田中英夫編集, 1993).

6) 다수의 기준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지만, ㉠ 집단의 구성원은 반드시 확정될 수 있고, ㉡ 집단의 구성원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Eisen v. Carlisle & Jackquelin, 417 U.S.156(1974)). 따라서 인디언 후에 전체, 멕시코계 미국인 전체 혹은 뉴욕시민전체 등을 대표하는 집단대표소송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7) O'Shea v. Littleton, 414 U.S. 488(1974).

8) Fed.R.Civ.P.§23(a).

9) Fed.R.Civ.P.§23(b).

써,¹⁰⁾ 집단대표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회피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소송보다 ADR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 가운데는 이러한 ADR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한 비용절감의 이점을 고려하여 ADR, 특히 중재를 소송에 대신하는 유일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의무화하는 이른바 의무적 중재(mandatory arbitration)를 약관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¹¹⁾ 소비자계약에서 이러한 의무적 중재에 관하여는 분명히 집단대표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경향도 강하다.¹²⁾ 그러나 이 의무적 중재의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ADR은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물론 집단대표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협 하에서 기업에서도 환영되며 양자의 합의에 기하여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계쟁소송 건수가 많은 법원에서도 ADR에 의한 해결은 그 부담경감으로 연결되므로 그것이 공정·공평한 한 일반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손해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소비자분쟁에 있어서는 소비자에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ADR은 합리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되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집단대표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가 존재함에 따라 더욱이 기업에 있어서도 고액의 배상이 부과될 위험이 있는 소송과 비교하여 ADR이 바람직한 분쟁해결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형 소비자ADR¹³⁾의 이용이 실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
- 10) 집단대표소송의 배제조항에 대하여는, G. C. Cook & A. K. Brennan, 2008 참조.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제조항에 대하여는, P. L. Bruner & J. O'Connor, 2007 참조. 다만 이들 배제조항이 중재합의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효력은 인정되지만 최근 그 배제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다. 즉 “중재의 소송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Green Tree Financial Corp. v. Bazzle, 539 U.S. 444(2003)(명시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이 없는 한 집단대표중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 Strak v. Sandberg, Phoenix & von Gontard, P.C., 381 F. 3d 793(8th Cir. 2004)(징벌적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의 최근 동향도 중재에 관한 것이며 상대기업과의 합의에 의하여 내용이 정해지는 조정에서는 구제로서 당연히 집단대표소송과 같은 권리의 집합적 행사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배제되게 된다.
- 11) 예컨대 거대전화회사인 Verizon의 휴대전화약관(Customer Agreement Terms & Conditions)에서는 분쟁해결과 의무적 중재(dispute resolution and mandatory arbitration)라는 조항 하에서 행정기관에 분쟁을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 외에 분쟁해결은 오로지 미국중재협회(AAA)와 기업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 : BBB)의 조정 혹은 중재에 따른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다. 즉 해당 조항은 소송에서의 집단대표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의도에서 편입된 것이다(Verizon wireless' Customer Agreement Terms & Conditions, available at <http://www22.verizon.com/ForYourHome/New Connect/Wireless Disclaimers.asp?Content=CustAgreement>).
- 12) 미국통일상법전(UCC) 제2편 개정작업에서 논의된 이른바 “Gateway Problem”은 원래 이 소비자 계약에서의 의무적 중재와 관련된 분쟁에서 발단이 되었다(三枝健治, 2008).
- 13)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비자 ADR에는 몇 가지의 형태가 있다. (a) ADR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민간인지 행정인지, (b) ADR 서비스의 제공내용이 당사자 간에 해결책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판정인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a), (b)에 응하여 소비자 ADR로서 ① 민간·조정형, ② 행정·조정형, ③ 민간·판정형, ④ 행정·판정형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있으며, 운영의 자금과 중립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 민간형 ADR은 분쟁당사자인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그 임의성에서 한편으로 집단대표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회망하는 소비자에게도 그들의 권리행사를 부정하는 중재를 소송에 대신하는 유일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의무화하는 의무적 중재가 약관에 편입되어 강제된다는 문제(남용적인 과대이용)와 한편으로 소비자가 조정을 희망하더라도 상대기업이 이유 없이 그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문제(남용적인 과소이용)가 발생하게 된다.

2. 중재판정부의 판정

중재판정부의 판정권의 문제란 중재판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신에게 판단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리고 중재합의의 존부 혹은 유효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 이다. 즉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이 논쟁되거나 중재판정부의 심리가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되어 지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의 기초가 되고 있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합의범위를 스스로 판단하여 법원을 구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판정권 여부와 중재합의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느냐 하는 것이다. 중재판정부의 판정권에 관한 문제란 결국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되는지 하는 것이다(양병희 외 8인, 2005).

중재합의 자체에 대한 분쟁, 즉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와 무효·취소의 여부 및 존속과 소멸에 관한 분쟁이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소송으로 제기되었을지라도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중재를 속행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중재합의는 소송법상의 제소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판정 이전에 그 소송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중재절차는 판정 없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중재판정 시까지 소송상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나 집행판결의 소에서 이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김경배, 2005).

중재합의의 유효여부를 판단할 때 중재합의와 중재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중재조항이 중재계약의 구성부분을 이룰 때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Cooke, et al., 2007).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재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중재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재계약과 중재합의를 항상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중재조항과 그 밖의 계약의 구성부분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중재

계약이 거래당사자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중재계약과는 분리하여 중재합의만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항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것 인지는 사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양병희 외 8인, 2005). 중재판정부가 사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판정권을 인정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한 심사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 혹은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행하여진다. 이로서 중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는 것이다.

중재인의 직무는 불대행적 작위의무로서 그 이행이 본인의 양심과 경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재인의 의무로서 중재법에서 규정하는 실정법상 의무와 더불어 중재판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법상 요구되는 의무로서 신의칙과 법정주의에 입각한 정당성, 타당성을 구현하여야 함은 물론 판정에 있어 중립성, 합리성 및 법적용의 적정성, 견해의 일반성까지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인이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위탁사무는 중재절차면 에서나 실제 면에서 정의로운 판정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재인의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 의무까지 내포되는 것이라 하겠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이 당사자와의 계약의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법원의 재판사무처럼 그 판정에 있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불이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경배, 2005).

한편 중재의 당사자와 부패·부정행위를 한 중재인이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는 영국·미국·한국·일본의 어느 국가의 중재법도 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평하며 독립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는 위의 국가법 모두 취소에 대한 인정기준은 엄격하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에서는 엄격함의 정도는 다르다. 해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현재도 해사법 분야에서는 국제해운계를 선도하는 영국에서는 해사판례, 특히 상당수의 당사자가 영향을 받는 공통·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견해를 통일화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는 전통이 있어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중재인의 판정에는 법원의 관여는 가능한 자제하고 있으며 중재인은 적용해야 할 법을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경우—명백한 법의 무시(manifest disregard of law)—이외는 중재인의 법의 오인·부적용에 근거한 판정이더라도 이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사법계의 조류이었다.¹⁴⁾

구체적으로 영국은 중재법 제69조에서 중재판정 중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원의 상소허가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Wilson, 2008), 그것은 ① 중재판정부의 사실인정의 기준에 근거하여 법률문제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명백하게 오판인 경우이거나, ② 중재판정이 중대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법률문제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

14) 명백한 법의 무시의 유래·발전에 대해서는, 平泉貴士, 1996 참조.

이 공정하고 적절한 사정·상황에 있다고 법원이 납득한 경우에 한하여 상소는 허용된다.

Ⅲ. Stolt-Nielsen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미국 코네티컷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노르웨이의 거대선주인 Stolt사의 법률고문이 사내의 반독점법¹⁵⁾ 위반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임원들에게 주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임원들은 법률고문의 주의를 듣지 않았으며, 그 후 법률고문은 퇴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2002년 6월 법률고문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미국법원에 제소한 것이 계기로 되어 미국사법성이 수사를 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Stolt사는 새롭게 위탁한 미국사법성 출신의 반독점법과 관련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2003년 초에는 미국사법성뿐만 아니라 유럽위원회에 대하여도 작량감형(경감처벌)(leniency)¹⁶⁾을 받았다. 그 후에 다른 노르웨이 선사 2개사(Odfjell사와 Jo Tanker사)와 세계규모의 시장분할·화주할당 등의 카르텔협정을 한 것에 대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자백하였다. 이 자백을 근거로 2003년 2월 20일 미국, 영국, 노르웨이에서 관계당국에 의한 예고없는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서류를 몰수하였다. 최초로 자백하여 사면을 득한 Stolt사와 카르텔을 체결하였다고 고발된 Odfjell사와 Jo Tanker 2개사에 2003년부터 2004년 동안에 거액의 벌금(Odfjell사-42.5백만 달러, Jo Tanker사-19.5백만 달러)과 그들의 간부에게는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되었다.

이와 같은 당국(미국에서는 사법성, 유럽에서는 유럽위원회)에 의한 수사를 미국의 유력신문사인 월스트리트저널이 특집 기사를 편성하여 보도함에 따라 이 반독점법 위반 사건은 케미컬탱커 용선자뿐만 아니라 집단대표소송변호사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2003년 5월에는 위의 3개사에 대하여 AnimalFeeds사와 그 밖의 10개사가 집단대

15) 미국의 반독점법(Antitrust Law)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유럽·캐나다의 반경쟁법, 일본의 독점금지법에 해당된다. 물론 국가에 따라 규정은 다르지만, 카르텔(부당한 거래제한)을 위법으로 하는 취지와 그것에 대한 당국의 해석은 거의 마찬가지이다.

16) 사면(amnesty)이라고도 하며 소추·과징금면제-미국의 형사사건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사법거래와 유사한 제도를 말한다. 사면이란 과거의 범죄, 특히 정치적 범죄를 불문한 행위를 말한다. 원래 국왕의 대권에서 단서가 된 것으로 국왕 혹은 행정부의 수장(미국에서는 연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 주법에 대하여는 주지사)의 재량에 속한다. 미국 헌법상에는 이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제2편 제2절 제1항은 대통령에게 사면(pardon)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양자는 이론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田中英夫編集, 1993).

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선주인 Stolt사는 집단대표소송을 제기한 자의 대부분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Asbatankvoy 서식17), 거기에는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뉴욕중재로 해결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용선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중재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방소항변)고 주장하였다. 제1심에서 이 사건은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근거한 손해배상이지만 반독점법 위반안건은 중재에 익숙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여 Animal Feeds사의 집단대표소송에 대한 제기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2심에서는 2004년 12월, 제2순회구항소법원에서 중재로 처리·해결하여야 할 분쟁의 범위에 대해서는 Asbatankvoy 서식의 중재조항은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을 예상한 포괄적인 규정이며,¹⁸⁾ 선주의 부당한 거래제한(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하여 고액의 운임 지급을 강요받았다고 하는 용선자의 손해배상청구안건이더라도 어떤 성질의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에 부탁한다는 합의를 체결하고 있는 이상 중재를 피하고 개별소송 혹은 집단대표소송으로서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른바 방소항변이 확인되어 이것이 확정되었다.

2. 중재판정과 법원판결의 내용

- (1) 위의 제2순회구항소법원판결에 따라 집단대표소송을 의도한 용선자는 다시 그 손해배상청구를 개별로 뉴욕중재에서도 제기하였지만, 일부의 용선자는 중재에서도 집단대표소송은 성립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2005년 5월 Asbatankvoy 서식의 뉴욕중재조항에서 집단대표중재는 허용된다고 하여 집단대표중재를 신청하였다.
- (2) 중재인은 선결사항으로서 Asbatankvoy 서식의 중재조항에서 집단대표중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할 것을 결정하고 양당사자가 각각의 주장·반론을 하게 한 후 2005년 12월 중재인은 3명 전원일치로 용선계약서식의 중재조항 하에서는 집단대표중재는 허용된다고 판정하였다.
- (3) 이 중재인의 판정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선주의 신청에 근거하여 심리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SDNY)은 위의 중재판정(중재조항의 해석)을 국제해사관습법·판례법·연방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판정이라고 하여 2006년 6월에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4) SDNY의 판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용선자는 제2순회구항소법원에 상소하였다.

17) 이 사건에서는 Asbatankvoy 서식 이외에 Vegoilvoy 서식도 관련되어 있었지만 이하에서는 Asbatankvoy 서식만의 용어를 사용한다.

18) Asoma Corp. v. SK Shipping Co., 467 F.3d 817,823(2d Cir. 2006).

2008년 7월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중재인의 판정은 명백한 법의 무시로까지는 할 수 없으며 그러하지 않은 이상 중재인의 판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SDNY의 판결을 취소하고 중재판정을 유효하다고 하였다.

- (5) 제2순회구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선주는 연방최고법원에 상소하였는데 이 상소는 수리되었다.
- (6) Asbatankvoy 서식의 중재조항에서 집단대표중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0년 4월 27일 연방최고법원은 중재조항에 집단대표소송의 규정이 없고 양당사자간에 집단대표소송의 합의도 없는 경우에 중재인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하는 것은 양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중재의 이념과 그 이념에 입각한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 FAA)¹⁹⁾에 의하여 중재인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초월한 것은 연방중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중재인의 판정은 명백한 법률무시로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인정한 제2순회구항소법원판결과 함께 취소하고 Asbatankvoy 서식의 중재조항에서는 집단대표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사법계에서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던 문제도 중재규정에서 집단대표중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집단대표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 확립되게 되었다.²⁰⁾ 이 연방최고법원판결(다수의견)은 중재의 본질, 중재의 위상, 집단대표중재의 특징에 대하여 그 신념을 기피하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IV. Stolt-Nielsen 사건판례의 분석

1. 중재의 본질

- 19) 연방중재법(미국합중국법 제9편) 제10조: 중재판정, 취소, 이유, 재심. (1) 다음의 어느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이루어진 지역의 연방법원은 중재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의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a) 중재판정이 부패, 사기 혹은 부당한 수단에 의하여 내려진 경우, (b) 중재인의 전권 혹은 그 어느 쪽에 명백한 편파 혹은 부패가 있었던 경우, (c) 중재인이 충분한 원인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의 연기를 거부하거나 분쟁의 적당 또한 중요한 증거의 심리를 거부하는 비행을 범하고 혹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을 한 경우, (d) 중재인이 그 권한을 초월한 경우 혹은 그 권한행사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부탄된 사항에 대한 상호적, 최종적, 확정적인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되어 더욱이 중재계약에 규정된 중재판정을 하여야 할 시기가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그 재량으로 중재인에게 재심리를 명령할 수 있다.
- 20) 용선계약의 중재규정에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대표중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소수의견의 Ginsburg 판사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일방에만 유리한 인쇄계약서를 상대방이 전적으로 수령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계약서의 중재규정에 그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단대표중재가 항상 허용되지 않는다고까지는 단언할 수 없다.

Stolt-Nielsen 사건에서 중재인이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한 것은 연방중재법의 위반이 된다. 연방중재법상 중재는 합의에 근거한 것이며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기본인식을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명확하지 않은 몇 가지 원칙을 부과하고 있다. 1925년 연방의회에서 연방중재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목적은 각주간, 각지역간 혹은 외국국민과의 계약, 해사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서면규정 혹은 합의를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1947년 다시 법령화되어 법전으로 정리된 것이지만 관계부분에서는 해사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어떤 해사거래이더라도 중재를 요구하는 서면상의 규정은 계약이 법률상 혹은 형평법상의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취소불능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중재법은 중재를 합의한 당사자에게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결정을 연방지방법원에 청원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과 조화하여 연방최고법원은 다수의 기회에서 연방중재법의 중심 혹은 주요 목적은 중재라는 사적 계약이 그 조건에 따라 실행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재계약을 실행하는 중재조항을 해석하는 법원이나 중재인도 계약당사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기대에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의 의도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재인의 권한이 분쟁을 재판제도가 아니라 사적분쟁해결제도에 위임하는 합의를 한 당사자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중재합의를 작성하는 것은 자유인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에 부탁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인이 진행하는 절차원칙을 합의할 수도 있다. 더욱이 중재인도 선정할 수 있다.

이들 원리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단정되는 계약상의 기준이 없는 한 연방중재법 하에서 당사자는 집단대표중재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Stolt-Nielsen 사건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는 양당사자의 일치된 견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대표중재를 강요하고 있다. 중재판정부의 견해 중에서 비난받아야 할 중대한 점은 선주는 용선계약의 당사자가 집단대표중재를 배제할 의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청인인 AnimalFeeds사는 해당 운송에 사용된 용선계약서를 선택하는 것은 송하인이며, 또한 그것이 상관습이라는 것을 논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집단대표중재의 문제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중재는 동의사항이라는 중재법의 기본원리에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다.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그 합의를 이행하는 것에 필요한 절차를 채택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중재인에 부여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대표중재를 인정하는 묵시의 합의란 중재인이 중재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중재합의와 중재대표중재의 관계

2003년 Green Tree Financial Corp. v. Bazzle 사건²¹⁾(이하, “Bazzel 사건”이라 한다)은 집단대표중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중재조항이 편입되어 있는 금융(loan)업자와 주택보수를 위하여 돈을 이용한 주민(Bazzle)간의 계약에 관한 사안이다. 연방최고법원판결(다수의견: 5명, 소수의견: 4명)에서 다수파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하여 계약에 아무런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자가 법원인지 중재인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그것은 중재인이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그 이외의 문제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주최고법원판결을 취소하고 중재로의 반력에 찬성한 다수파의 1명인 Stevens 판사는 이 다수파의 의견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였지만 그 문제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그가 선호한 집단대표중재에 대하여 법률문제로서 타당하다는 견해를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Bazzle 사건의 연방최고법원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azzle 사건의 최고법원판결에 대한 다수파의 의견은 Stolt-Nielsen 사건 중재당사자를 당황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당사자는 Bazzle 사건판결에서 계약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법원이 아니라 중재인에게 요구한 것이라 믿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이 문제(해당 계약으로 집단대표중재가 허용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분명하게 중재판정부에 위임하고 양당사자 모두 이 문제의 중재에 대한 부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당사자나 중재판정부도 별도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Bazzle 사건의 연방최고법원판결은 계약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해석할 때에 그 판단자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점이다. 그러나 Bazzle 사건의 연방최고법원판결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중재합의가 집단대표중재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지는 법원이 아닌 중재인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이 Bazzle 사건에서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인 중재합의가 집단대표중재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방최고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급심법원 간에 판단이 엇갈려 왔다.

이번 Stolt-Nielsen 사건에서 중재신청인인 AnimalFeeds사는 동물용 사료 원료제조

21) 539 U.S. 444(2003).

업자인데, Stolt-Nielsen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Stolt-Nielsen사가 가격담합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nimalFeeds사는 운송계약에 중재합의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Stolt-Nielsen사와 유사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직접 구매자를 대표하여 집단대표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를 맡은 중재관정부와 항소법원은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반면 제1심 법원은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연방최고법원은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이 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개별분쟁과 집단대표중재는 매우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집단대표중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계약이 침묵하고 있을 때 중재인은 그 침묵을 집단대표중재의 합의로 가정하거나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그 대신에 중재인은 해당 계약의 준거법에 대하여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3. 중재인의 권한이탈

집단대표중재에 합의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집단대표중재를 강요하는 것은 연방중재법에 위반된다. 중재판정은 중재인이 합의문서의 해석과 적용을 벗어나 그가 선호한 독자적인 기준을 이용한 때에는 중재인의 판정은 권한을 초월하였다는 이유로 연방중재법 제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취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재인의 직무는 계약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며 공공정책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중재관정부는 해당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집단대표중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청한 AnimalFeeds사의 공정정책론에 그 판단을 준거하였고 본다. 그러나 협정서(용선계약서)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것을 당사자가 서로 인정한 이상 중재인의 적절한 직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배되고 있는 법원칙을 판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재관정부는 Bazzel 사건의 연방최고법원판결 후에 내려진 몇 가지 중재판정이 연방중재법, 해사법, 혹은 뉴욕법의 어떤 법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 판단을 이들 중재판정에 근거하여 행하고 있었다. 이들 법률(연방중재법, 해사법 및 뉴욕법)²²⁾에 중재조항은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Default Rule”²³⁾이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22) Fieger v. Pitney Bowes Credit Corp., 251 F.ed 386, 393(2d Cir. 2001).

23) 쟁점에 관하여 계약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쟁점의 해석·판단에 이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Green Tree Financial Corp. v. Bazzle 사건에서 연방최고법원판결(2003년 6월)이후 중재규정이 집단대표중재에 대하여 어떤 규정도 없는 경우 다수의 중재인 혹은 어느 주법원은 Default Rule에 의하여 집단대표중재가 허용된다고 믿고 있었다. 다수의견은 이 Default Rule의 해석을 착오라고 하여 중재규정

도 검토하지 않았다. 집단대표중재는 모든 경우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 Bazzle 사건에 대한 연방최고법원판결 후의 중재인의 총의라고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집단대표중재가 건전한 정책이라고 자신들의 견해를 고집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강요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하여 연방중재법, 해사법 혹은 뉴욕법에서 유래하는 판단원칙을 확인하거나 적용도 하지 않고 중재판정부가 선호하는 정책을 강요함에 따라 연방중재법에 규정한 권한을 초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연방최고법원은 연방중재법 제10조(b)에 따라 중재인에 의한 재심리를 명령하거나 중재판정부에 부탁된 문제를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실에서는 하나의 회답밖에 있을 수 없어 중재인에 의한 재심리를 명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 Stolt-Nielsen 사건판결의 영향

미국에서는 뉴욕해사중재판정에 대하여 명백한 법의 무시라고 하여 중재판정의 취소를 연방법원(뉴욕남부지구연방지방법원과 제2순회구항소법원)에 상소한 사례는 많았지만,²⁴⁾ 취소가 인정된 적이 없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27일 미국연방최고법원은 노르웨이의 거대케미컬 탱커선주의 반독점법 위반안건에서 용선자가 신청한 집단대표중재에 대하여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에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한 선주·용선자 간에 집단대표중재의 합의도 없는 경우에 중재인이 집단대표중재를 인정하는 것은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중재의 이념과 그 이념에 근거하여 중재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이탈하는 것이 되어 연방중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연방최고법원은 중재인의 판정은 명백한 법의 무시로까지 할 수 없다고 하여 시인한 제2순회구항소법원판결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 중재판정을 무효로 하는 획기적인 판결(다수의견 : 5명, 소수의견 : 3명)²⁵⁾을 내렸다.

은 당사자의 동의가 기본인 이상 동의가 없는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문제로서 착오라고 판시한 것이다.

24) 명백한 법의 무시를 제시한 중재판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Hoeft v. MVL Group Inc., 343 F.3d 57,69(2d Cir. 2003) ; Duferco International Trading v. T. Klaveness Shipping A/S, 333 F.3d 383, 388(2d Cir. 2003) ; Goldman v. Architectural Iron Co. v. Iron Co., 306 F.3d 1214, 1216(2d Cir.2002)). 그러나 중재인의 판정을 무효로 하는 타당한 근거로서 명백한 증거의 무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Wallace v. Buttar, 378 F.3d 182, 193(2d Cir.2004)).

25) Alito 판사는 최고법원의 의견을 작성·제시하고 그리고 Roberts, Scalia, Kennedy와 Thomas 판사도 이 의견에 찬성하였다. 한편 Ginsburg 판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 Stevens와 Breyer 판사는 그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Sotomayer 판사는 이 사건의 검토 혹은 판단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연방최고법원판결에 의하여 용선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중재조항에 집단대표중재가 합의되어 있지 않는 중재분쟁에는 집단대표중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 이 사건판결로 인하여 집단대표중재가 일반화되어 그것을 위화감 없이 받아들이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던 미국사법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 연방최고법원판결을 앞두고 미국의 다수의 소비자단체와 집단대표소송변호사단체는 집단대표중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집단대표중재에 반대하는 미국상공회의소와 BIMCO, INTERTANKO, 뉴욕해사중재협회 등의 국제해운단체는 반대입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쌍방 각각의 견해(Amicus Brief)를 연방최고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 판결이 야기한 악영향의 정도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중재판정의 내용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재판정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때(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가)호)²⁶⁾라고 규정되어 미국보다도 더욱이 취소사항의 범위는 좁다.

V. 결 론

집단대표중재에서 중재인은 하나의 계약의 양당사자 간에 하나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당사자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Stolt-Nielsen 사건에서도 신청인은 국내의 집단대표중재와 관련된 자는 수백 명이 되며 이 이외에 국외(미국으로의 수출·미국에서 수입하는)의 관련된 자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7년 동안 장기간의 분쟁도 마지막에는 선주 측의 역전승리로 끝났다.²⁷⁾

더욱이 집단대표중재에는 대개의 개별중재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와 기업비밀의 보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재에 합의한 때의 당사자의 견해는 무시되게 된다. 중재인의 판정은 단독의 중재협정의 당사자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결석한 당사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판정하는 것이다. 당사자로서 지정도 되지 않거나 송달도 되지 않은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그 재판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예외에 집단대표중재는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집단대표중재(소송)의 관계자의 숫자는 집단대표소송에 필적하는 한편 집

26) 예컨대 중재판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강행법규 혹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로서 도박계약이나 뇌물계약을 이행하라는 판정, 금제품을 인도하라는 판정 등을 들 수 있다 (김경배, 2005).

27) 이 7년간에 이르는 중재의 이념에 관련된 소송에서 확인된 미국법 원칙은, ① 중재규정이 있는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여야 하며(방소항변), ② 집단대표중재 규정이 없는 중재규정에서는 집단대표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대표중재에서는 소송과 달리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사법의 점검범위는 매우 좁다. 이와 같이 단순한 2자간의 중재와 복잡한 집단대표중재의 차이는 매우 크며 중재인이 집단대표중재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집단대표중재이며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상당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연방중재법에서 중재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의견²⁸⁾은 이 문제를 AnimalFeeds사의 클레임을 제시하는 절차형태의 문제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집단대표중재와 개별중재의 매우 커다란 차이를 극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러한 단순한 것이었다면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중재법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의견과는 전혀 반대로 중재는 합의가 기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법원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양당사자가 집단대표중재를 하는 것에 합의하였는지 라는 문제라고 본다. 양당사자가 합의는 없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Stolt-Nielsen 사건에서 당사자는 그 분쟁을 집단대표중재에 부탁하는 것을 강요받은 일은 없다는 것과 관련되게 된다. 이들의 이유로 제2순회구항소법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의견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도록 항소심에 반려한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에 대체로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판결은 신용카드계약, 소프트웨어 공급계약과 같이 회사가 다수 소비자들 상대방으로 하여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비자집단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련분쟁을 소비자 집단대표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지 아니면 집단대표중재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공급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혹은 개정하면서 중재조항을 포함할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도 중재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집단대표중재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다. 즉 어떤 근거 혹은 사실들을 집단대표중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로 인정하고 각 증거에 어느 정도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이 판결이 사업자간 계약이 아닌 소비자와 기업간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은 아직도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28) 이것은 Ginsburg 판사, Stevens 판사, Breyer 판사 3명의 의견이다.

참고문헌

-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 김재명, “항해용선계약상 체선기간의 예외규정에 관한 연구-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4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9, pp.165-183.
- 김종석, “항해용선계약상의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0.
- 박길상·양정호,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의 개시요건”,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2006.
- 송상현·김현, 『해상법원론 제4판』, 박영사, 2008.
- 양병희 외 8인, 『주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2005.
- 우성구·한낙현, “항해용선계약에서 체선료와 부적운임에 관한 판례분석”, 『국제상학』, 제2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69-86.
- 이광희·이원정, 『용선계약실무』, 박영사, 2009.
- 이상운, 『영미법』, 박영사, 2003.
- 이원정·방희석, “항해용선계약상 F.I.O.조건 판결사례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3호, 2006.
- 임석민, 『국제운송』, 삼영사, 2007.
- 정영석, 『용선계약법강의』, 해인출판사, 2005.
- 한낙현, “항해용선계약상 해제기일 전의 장박기간 개시의 효과에 관한 고찰-Front Commander호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2008, 111-149.
- 한낙현, “항해용선계약상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의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5집 제2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09, 149-174.
- 한낙현·김은주, “항해용선계약상 안전선석의 묵시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6집 제3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10, 92-113.
- 한낙현·김재명, “항해용선계약에서 적부불량에 의한 화물손해와 운송인의 책임에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pp.129-150.
- 한낙현·박영배, 『해상운송과 해상적하보험』, 두남, 2009.
- 谷本裕範·宮脇亮次, 『新·備船契約の實務的解説』, 成山堂, 2008.
- 三枝健治, “UCC第二編改正作業における約款の採用規制の試み(2)(3)”, 『新潟法政理論』, 第38卷 第3号, 第4号, 2008.
- 日本荷主協會, 『JSC國際物流用語辭典』, 2003.
- 田中英夫編集代表, 『英米法辭典』, 東京大學出版會, 1993.
- 平泉貴士, “海事仲裁條項と海物品運送法(5·完)-米國の判例・學說を中心として-”, 『海事法研究會誌』, No.132, 1996.

- Baughen, S., *Shipping Law*, 4th ed., Cavendish Publishing Ltd., 2009.
- Boyd, S. C., et al.,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21st ed., Sweet & Maxwell Ltd., 2008.
- Bruner, P. L. and O'Connor, J., *Bruner & O'Connor Construction Law Guide*, West, 2007.
- Cook, G. C. and Brennan, A. K., "The Enforceability of Class Action Waivers in Consumer Agreements", 40 *UCC L.J.*, 2008, p.331.
- Cooke, J., et al., *Voyages Charters*, 3rd ed., informa, 2007.
- Girvin, S., *Carriage of Goods by Sea*, Oxford University Press Ltd, 2007.
- Thomas, T. J., *Admiralty and Maritime Law*, 4th ed., West, 2004.
- Williams, H., *Chartering Document*, 3rd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6.
- Wilson, J. F., *Carriage of Goods by Sea*, 6th ed., Pearson Education Ltd., 2008.

국문 요약

항해용선계약상 집단대표중재관련의 사례분석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한낙현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 항해용선계약, Asbatankvoy 서식, Stolt-Nielsen 사건, 중재조항, 집단대표중재, 연방중재법